

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운영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가. 투자유치 위원회 비상설화 신설(안 제19조)

- 제3항 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” 신설

나.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(안 제20조)

- 제4항 “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”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7. 1. ~ 2024. 7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평창군 공고 제2024-930호, 경제과-4778(2024. 7. 22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9239(2024. 6. 17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실-9239(2024. 6. 17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1668(2024. 6. 24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773(2024. 7. 29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797(2024. 8. 14.)호]

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설치한다”를 “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설치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9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20조(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20조(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24. 7. 10.]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

-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이 서 진
연락처	(033) 330 - 2540